

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및 재참여 제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및 취업지원 중단 처분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당사자 부재 및 연락 미수신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4. 12. 18.

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장



- 건 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
- 근 거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, 제29조제1항제6호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
-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연번	성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	송달불능 사유	주소
				처분사유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	
1	오0화	81.01.19	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중단처분 사전통지 (의견제출 통지)	수급자격 인정일 이후 연락 두절 및 출석통지 2회 불응(반송) - 1차 출석통지: 2024. 11. 14. - 2차 출석통지: 2024. 11. 21.	○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중단 처리 ○ 처분일로부터 3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	폐문부재	경기도 시흥시 정왕대로 27번길 11(정왕동)

4. 공고기간: 2024.12.18. ~ 2025.01.02. (15일간)

5.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시흥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김훈영(Tel.031-496-196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